

【 주간 포커스 】

BCBS, '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(안)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

장동식 수석연구원

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가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자본 및 유동성에 대한 규제 개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.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합의된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 규제 기준이 지난 9월 12일 공표되었다. 동 기준이 우리나라 은행의 자본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,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및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용 효율적인 위기관리 측면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.

-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대표들은 2010년 7월 26일과 9월 12일에 개최된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(GHOS: Meeting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)에서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 도입에 합의하고 이를 공표
 - 바젤은행감독위원회(BCBS : 이하 위원회)는 2009년 12월 '자본 및 유동성에 관한 규제 개편안'¹⁾을 발표
 -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수장들은 2010년 7월 12일 위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GHOS에서 '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(안)에 대한 큰 틀을 합의
 - 또한 2010년 9월 12일 GHOS에서 자본 및 유동성에 관한 규제강도(calibration)와 이행계획(phase-in arrangements)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
- 이번에 GHOS에서 결정한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 부문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음.
 - 개편안은 스트레스 기간에 개별 은행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시건전성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, 은행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와 동리스크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음.

1) Consultative Document: ① 「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banking sector」, ② 「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easurement, standards and monitoring」

□ 첫째, 자본의 정의, 위험기반 규제 비율 등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함.

- 은행의 경우 리스크 익스포저가 양질의 자본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, 금융위기 시 손실과 상각 규모가 은행 보통주 자본 구성 항목인 이익 잉여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기준의 한계가 노출됨.
- GHOS는 이를 고려하여 자본의 인정 요건, 위험기반 규제 비율 등을 강화
 - 자본의 인정 특히, 보통주 자본의 인정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자본비율 충족에 소요되는 부문은 보통주 자본에 포함시키고, 이연 법인세, 모기지 서비스 권리 및 비연결 타 금융회사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보통주 자본의 15% 한도 내에서 예외를 인정
 - 위험기반 규제 비율과 관련하여 총자본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통주 자본비율을 4.5%, 보통주 자본을 포함한 Tier1 자본비율을 6%로 상향 조정²⁾
 - 금융·경제상의 위기발생 시 손실 흡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 완충자본의 의무적립비율을 도입하고, 아울러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 축적을 야기하는 과도한 신용팽창 발생 시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추가 적립³⁾
- GHOS는 자본비율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함

□ 둘째, 위험기반 규제 비율에 대한 보조지표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함.

- 은행 부문은 금융위기가 가장 심각한 시기에 ‘자산가격 하락, 은행손실 증가 자본 감소의 악순환, 신용 가용성 위축 등’을 증폭시키는 레버리지 축소 전략을 사 용하도록 시장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음.
- GHOS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레버 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⁴⁾
 - 금융불안 시 디레버리징(deleverging)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의 손 실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상시에 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증가를 제한
 - 현행 바젤 II 방식을 보완함으로써 모형 위험 및 측정 오류에 대한 추가적인 안 전장치를 마련
- GHOS는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 Tier1 자본 기준 3%로 설정하여 시험운영기간 을 거친 뒤 2018년부터 의무준수 비율로 도입하기로 함.

2) 보통주 자본비율 = 보통주 자본 / 위험가중자산

Tier1 자본비율 = (보통주자본+기타Tier1)/위험가중자산

총자본비율 = (Tier1+Tier2) / 위험가중자산

3) 손실보전 완충자본(capital conservation buffer) = 보통주자본 / 위험가중자산 : 2.5%

경기대응 완충자본(counter-cyclical buffer) = 보통주자본 / 위험가중자산 : 0.0%~2.5%

4) 레버리지 비율 = Tier1 자본 / 총익스포저 (총익스포저 : 부내자산 + 부외거래 항목)

- 셋째,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손실 흡수력 제고를 위한 ‘제한된 재량’⁵⁾ 접근 방식으로 추가자본 규제 방안을 개발 중
 - 그리고 위원회는 이번 개편안과 FSB의 SIFIs(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) 규제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.
- 이 외에도 GHOS는 국제 유동성 기준 등에 대한 개혁안도 마련
 - 단기유동성 비율(LCR: Liquidity Coverage Ratio)⁶⁾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, 순안정자금조달비율(NSFR: Net Stable Funding Ratio)⁷⁾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의무준수기준을 도입
-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 규제 기준이 우리나라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
 - 우리나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고, 자본의 질 또한 우량한 편이고,
 - 감독당국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였고,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이 과도해지자 Tier1 자본비율을 중심으로 규제를 확대하여 왔기 때문
- 다만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 규제 기준은 은행의 채권포트폴리오 및 자금조달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 - 은행들은 유동성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공채 매수 강화, 금융채 보유 규모 축소 등과 같은 채권포트폴리오 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보임.
 - 또한 새로운 규제기준은 예금부채에 대한 안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은행채 발행보다는 예금유치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.

5) 제한된 재량(guided discretion) : 국제적 일관성/투명성 유지를 위해 마련된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각국 감독 당국에 재량을 부여

6) 단기유동성 비율 = 고유동성 자산 / 순현금유출 $\geq 100\%$: 단기유동성 비율과 관련하여 2010.7월에 공개 초안보다 Level 1 자산인 개인 및 중소기업 예금 등으로부터의 이탈률(run-off rate)을 하향조정하고, Level 2 자산(양질의 회사채, 커버드 본드 등)을 고유동성 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Level 1 자산의 40%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합의됨.

7) 순안정자금조달비율 = 인정되는 안정자금(부채 및 자본) / 필요 안정자금(자산) $\geq 100\%$

□ 그리고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은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기준 및 보험 회사의 투자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-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은행과 같이 자본 구분을 고려한 자본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,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도 자본 구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
- 또한 새로운 기준은 은행의 채권포트폴리오 및 자금조달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,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투자영업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□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의 영향이 제한적 이지만 비용 효율적인 위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

- 자본의 정의, 특히 보통주 기준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.
- 보험회사도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므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, 레버리지 규제에 있어서는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또한 필요함. KiRi

구 분	현 행	자기자본 규제
자본의 정의	명확한 기준 없음	도입논의 필요
유동성 규제	RAAS에서 평가	RBC와 연계하여 도입논의 필요
레버리지 비율	RAAS에서 평가	RBC와 연계하여 도입 논의 필요